



쇠고기의 트레이서빌리티에 대하여

「소의 개체식별을 위한 정보의 관리 및 전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국내에서 사육하여 2004년 12월1일 이후에 식육처리된 쇠고기 등을 사용한 특정요리에는 소의 개체식별번호(또는 로트번호) 표시와 장부 보존이 필요하게 됩니다.

특정요리란 「야키니쿠」, 「샤부샤부」 「스키야키」, 「스테이크」 입니다.

1. 특정요리 제공업자란

별첨 플로의 해당자입니다. 이른바 「전문점」. 기본적으로 야키니쿠, 샤부샤부, 스키야키, 스테이크를 요리전체(주류 제외)의 중심으로 하는 계획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는 해당.

2. 특정요리 제공업자가 행하는 것은

구입한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 또는 로트번호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그 구입한 것을 기록하는 동시에 특정요리로서 제공할 때 그 번호를 표시한다.

(1) 개체식별번호의 표시

특정요리를 제공할 때는 특정요리 한개마다 「점포의 보기쉬운 장소」 또는 「특정요리」에, 주된 재료인 특정 쇠고기에 관련되는 소의 개체식별번호 또는 로트번호를 명확하게 표시한다.

(2) 장부의 비치(구입의 기록과 보존)

장부의 비치, 구입한 특정 쇠고기마다 그 개체식별번호 또는 로트번호, 구입 연월일, 구입한 상대방(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구입한 증량을 기재. 장부는 1년마다 마감하고 마감후 2년간 보존한다.

3. 언제부터 실시할 필요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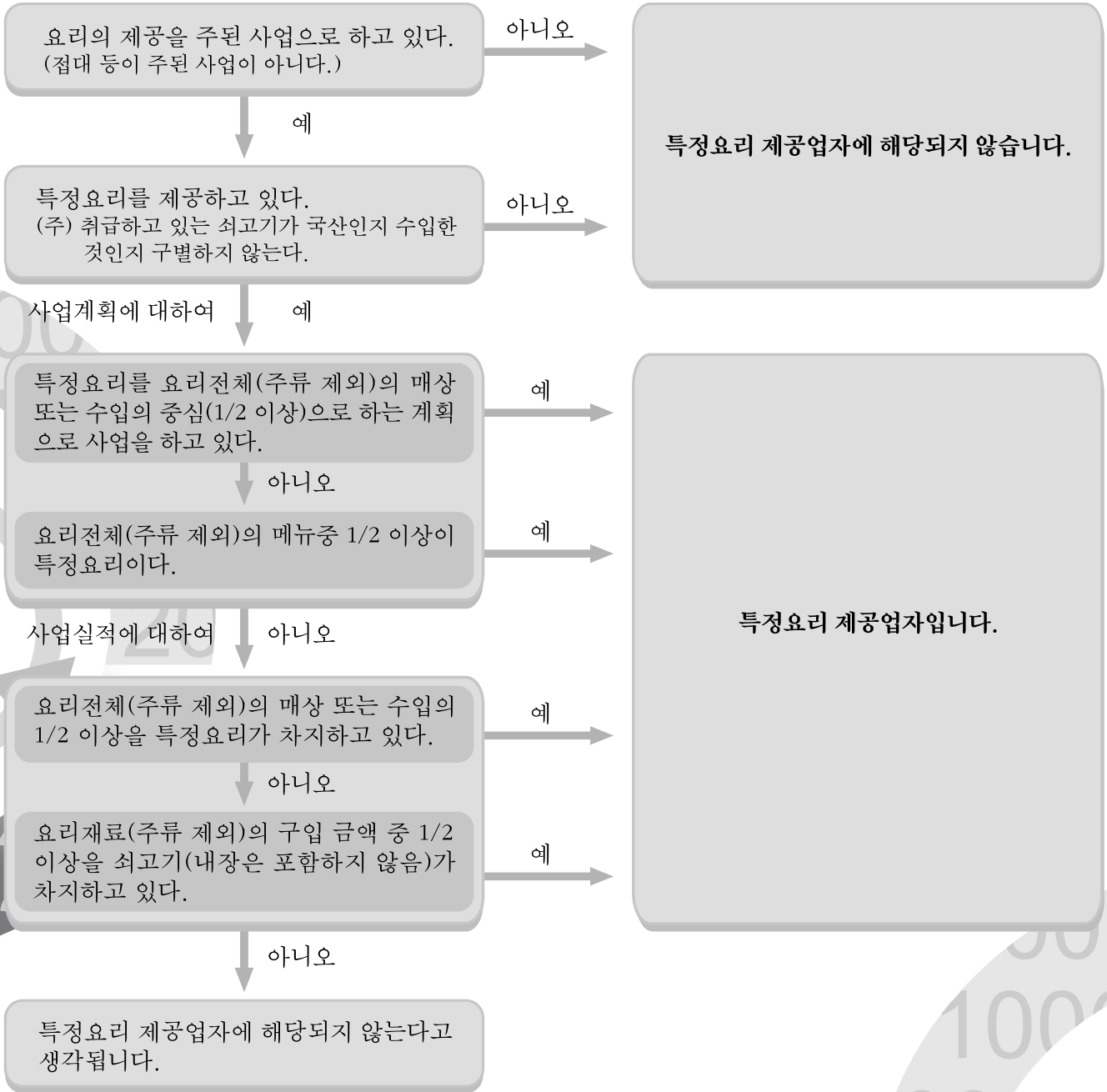
2004년 12월1일 입니다.

(주) 특정요리 제공업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요리 재료의 쇠고기가 국산인지 수입한 것인지는 관계없습니다. 단, 개체식별번호 또는 로트번호의 표시가 필요하게 되는 요리는 국산 쇠고기와 수입되어 국내에서 사육된 쇠고기(구입할 때 개체식별번호 또는 로트번호가 표시되어온 쇠고기)를 주된 재료로 하는 것만입니다. 그러므로 특정요리 제공업자라도 재료의 쇠고기가 전부 수입 쇠고기인 경우에는 그 업자는 표시해야 되는 요리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특정요리 제공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특정요리 제공업자」란, 특정요리의 제공을 주로 하는 이른바 「전문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하의 플로를 참고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특정요리를 요리전체(주류 제외)의 중심으로 하는 계획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는 특정요리 제공업자에 해당합니다. (복수의 사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마다 판단합니다.)



주) 예를들어 「스키야키」와 「샤부샤부」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모두, 스키야키만, 샤부샤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합계로 판단합니다.

**HOME PAGE
ADDRESS...**

(독) 가축개량센터의 홈페이지에서 개체식별번호를 입력하시면, 소의 품종과 나이, 사육 등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Handphone ▶▶▶ <http://www.nlbc.go.jp/mobile/>

• Internet ... ▶▶▶ <http://www.maff.go.jp/trace/top.htm>